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46 발의연월일: 2020. 9. 10.

발 의 자:김병욱・이상헌・고용진

이광재 · 민형배 · 최인호

김민철 • 이상민 • 정정순

강병원 · 김수흥 · 김승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차입공매도의 경우만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무차입공매도 등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통제 수단인 제재도 낮아 위법한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미국, 캐나다, 영국, 서유럽, 호주, 홍콩 등 다수의 해외 선진 시장에서는 대차계약 체결 방식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어 수기 입력에 의한 실수가 발생하기 어려운 반면, 우리 나라는 대차거래의 협상. 확정 및 입력 단계가 자동화되지 않고 모두 수기로 인한 대차계약의 체결방식, 즉 채팅(네이트온)이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고 이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투자자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장증권은 공매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차계약 체결 시 체결내역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착오입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갖추도록 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허용되지 않은 공매도 뿐만 아니라공매도를 활용한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의 경우에도 과징금을 도입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6조의4 신설 등).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6조의4(증권 대차거래 보고의무 등) 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증권 대차거래 계약의 차입자와 대여자를 의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체결된 대차거래 계약의 내용(종목, 수량, 대차거래 계약 고유번호, 대차거래 계약 체결일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를 갖출 것
- 2. 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차거래 계약 체결 즉시 그 내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금 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제180조제1항 단서 중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고, 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는 상장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차입공매도의 수탁을 하려는 자는 차입공매도 주문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⑤ 제4항의 확인 및 증명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9조의3(대차거래 보고 및 허용되지 않은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제18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이익등이 없거나 이익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9조의4(공매도를 활용한 내부자거래에 대한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제180조제1항의 거래 방법을 활용하여 제1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이익등이 없거나 이익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2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9조의5(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제180조제1항의 거래 방법을 활용하여 제1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이익등이 없거나 이익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43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제449조제1항에 제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의2. 제166조의4를 위반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166조의4(증권 대차거래 보고
	의무 등) 증권의 대차거래 계
	약을 체결하는 자(증권 대차거
	래 계약의 차입자와 대여자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1. 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
	결하는 자는 체결된 대차거
	래 계약의 내용(종목, 수량,
	대차거래 계약 고유번호, 대
	차거래 계약 체결일시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증명
	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장
	치를 이용하는 등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u>를 갖출 것</u>
	2. 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
	결하는 자는 대차거래 계약
	체결 즉시 그 내역을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
	차 및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	회에 보고할 것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 기100고(0 기고의 /미인/ U

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 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 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 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 다.

②・③ (생략)

<신 설>

·
된 스 시크 의시코레드로 된
할 수 있고, 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는 상장증권은 대통령령
<u>으로 정한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차입공매도의 수탁을 하려
는 자는 차입공매도 주문이 제
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
1 5 기 프신크 6 기 이 시 역
비른 시 거에 하이커크 시르
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즈머된 스 시니 기타드 카르다
증명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

<신 설>

<신 설>

<신 설>

야 한다.

⑤ 제4항의 확인 및 증명에 필 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9조의3(대차거래 보고 및 허 용되지 않은 공매도에 대한 과 징금) 금융위원회는 제180조의 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 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 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 으로 얻은 이익등이 없거나 이 익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제429조의4(공매도를 활용한 내부

 자거래에 대한 과징금) 금융위

 원회는 제180조제1항의 거래

방법을 활용하여 제174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 하여 거래한 자에 대해 위반행 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 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 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 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 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이익 등이 없거나 이익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제429조의5(공매도를 활용한 시세 조종행위 대한 과징금) 금융위 원회는 제180조제1항의 거래 방법을 활용하여 제176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 하여 거래한 자에 대해 위반행 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 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 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 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 9. (생 략)

<신 설>

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 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 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 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이익 등이 없거나 이익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 지그의 보고하 수 이다

<u>80日已 11日已 1 从日.</u>
세443조(벌칙) ①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80조를 의바하여 사자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 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8. (생 략) <u><신 설></u>

40. ~ 49. (생 략) ② ~ ④ (생 략)

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
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세449조(과태료) ①
1. ~ 38. (현행과 같음)
38의2. 제166조의4를 위반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자
40. ~ 4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